

「토지대장」을 통해 본 토지생산성의 변화(1910-1961)

김제시 죽산면 사례연구

조석곤*

Keywords

식민지기 토지생산성(land productivity in colonial Korea), 농지개혁(Land Reform), 식민지주제(colonial landlord system), 자작농체제(owner-peasant system)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rends of land productivity from the early 1910s to the late 1950s in Korea. The land productivity increased rapidly during the colonial era especially in the lands owned by Japanese landlords, mainly because they had purchased cheaper lands with low productivity. Although the land productivity in Japanese-owned lands increased rapidly, it did not exceed that of Korean-owned lands. This was because the land productivity in Korean-owned lands increased as well. Moreover, after the Korean Land Reform, the land productivity in the late 1950s recovered or exceeded that of the late 1930s, even after the chaotic years of the Korean War.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ile land productivity increased under the colonial landlord system, Korean landlords had also contributed to the increase as much as Japanese landlords. Secondly, the fact that the land productivity under the owner-peasant system was as good as the colonial landlord system shows that the agricultural skills embedded in petty peasants were important as good as the role of colonial landlords was.

차례

1. 머리말
2. 죽산면 경지규모의 추이
3. 『토지대장』의 토지등급과 토지생산성
4. 죽산면 토지생산성의 변화
5. 맺음말

* 상지대학교 교수. 경제학. 이 논문은 2011년도 상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1. 머리말

1980년대 중반 시작된 일제 식민지배의 역사적 평가에 관한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흔히 식민지근대화논쟁이라고 불리는 이 논쟁의 쟁점 중 이 글의 주제인 식민지시대 토지생산성과 관련된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대토지소유에 입각한 식민지지주제가 토지생산성에 미친 영향이며, 둘째는 해방과 그에 이은 농지개혁에 의한 식민지지주제의 해체가 토지생산성에 미친 영향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식민지지주의 자본가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개별 지주경영의 근대적·식민지적 성격을 구명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식민지지주의 역할에 대해 초기 연구들은 “일본인=동태적, 조선인=정태적”이라는 민족별 차이를 내포한 도식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조선인지주들도 적극적으로 자본주의적 농업경영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제하 토지생산성의 증대에 식민지지주제가 기여했음은 많은 연구들이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¹ 하지만 식민지지주의 ‘경영개입’이 가족노동에 기초한 소작농과 비교할 때 생산성 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한편 후자에 대해 기존 연구 대부분은 농지개혁이 한국자본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제도적 고찰에 집중하면서, 정작 토지생산성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² 그 이유는 농지개혁을 식민지유산의 연속과 단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

¹ 식민지지주제에 관한 연구는 자본주의적 경영을 하는 지주들(부르주아지주, 농장형지주)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조선인 지주들도 자본주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들 사례연구는 대체로 개항기에 지주로서 입신하여 식민지시대에 들어와 확대하였다가, 1930년대 산업자본화 또는 농장제경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홍성찬 1981; 박천우 1983; 최원규 1985; 김용섭 1992; 홍성찬 2003). 다만 농장제경영이라는 표현은 식민지지주제가 ‘토지소유자 지주-경작자 농민’이라는 도식으로부터 ‘경영자 지주-노동자 농민’으로 전환하였음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얼마나 보편적인지, 또는 소작농이 ‘가족노동에 기초한 소농경영’이라는 특징과 구별되는 노동자적 특질을 어느 정도 갖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분명치 않다.

² 농지개혁에 관한 연구는 분배방식의 반(反)농민성을 강조하는 소극적 평가(유인호 1975; 김병태 1981; 황한식 1985)로부터 장상환(1984,1985)을 계기로 농지개혁을 통한 지주제의 해체와 자작농체제의 확립을 강조하는 적극적 평가로 변했다(박석두 1987; 김성호의 1989; 홍성찬 1992; 장시원 1995). 최근에는 농지분배의 실제 과정에 대한 연구(류기천 1990; 함한희 1991; 정승진 2004; 정승진·松本武祝2006; 하유식 2010; 조석곤 2011)나 수분배농가의 경영안정성에 대한 연구(박희진 1988; 이종범 2002; 정상욱·김석준 2009; 하유식 2010; Cho 2013)가 진행되고 있다.

우가 많았기 때문인데, 이에 관한 기존 연구에는 상반된 입장이 공존한다. 남한자본주의의 ‘성공’을 논하는 주장들은 대부분 농지개혁에 의한 생산관계의 변화(식민지주제의 해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이지수 1994; 김일영 2000; 장상환 2000; 홍성찬 2001), 식민지로부터의 제도적 연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단절적 효과보다 사적 토지소유제도의 연속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안병직·이영훈 2007).

이러한 논점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에 대한 연구도 더 축적되어야겠지만, 농지개혁이 생산력에 미친 영향과 같은 물질적 토대에 관한 실증 연구도 필요하다. 사실 농지개혁에 따른 농업생산성의 변화는 식민지주제와 자작농체제 중 어느 쪽이 생산성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체제였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식민지주제의 생산기여도(식민지주들의 농업경영에 대한 물질·인적 참여가 어느 정도였는가), 자작농체제의 인센티브효과(소작농은 충분히 효과적으로 감시되었는가) 등과 같은 이론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의외로 없다. 박기혁 외(1966)는 설문조사를 통해 단보당 토지생산성의 증가는 농지개혁을 통해 자작농이 된 농민들의 영농의욕 증대 때문임을 보였지만, 요소투입의 증가 때문인지 소작제 폐지의 효과인지 여부는 식별하지 못했다. Jeon & Kim(2000)은 해방 전후 두 시기의 생산성을 비교하면서 소작제의 폐지로 농업생산성이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다. 반면 우대형(2001)은 경북 군별 자료를 이용하여 일제하 소작지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생산성 증가율이 낮았음을 보였다. 자작농체의 인센티브효과에 대해 Jeon & Kim은 양의 상관, 우대형은 음의 상관을 보인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1910년에서 1961년간 토지생산성의 변화를 김제시 죽산면 『토지대장』을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토지대장』으로부터 1910년대 초반, 1930년대 후반, 1950년대 후반 토지생산성을 구할 수 있다. 앞 두 시기 토지생산성 비교로부터는 일제하 토지생산성의 변화를, 뒤 두 시기 토지생산성 비교로부터는 농지개혁 전후의 토지생산성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두 실증연구가 거시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었다면 본고는 필지별 토지생산성에 관한 미시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다. 미시 자료는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거시 자료에 비해 포괄하는 지역 범위가 작다는 한계는 있지만, 필지별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고 하겠다. 김제군 죽산면을 선택한 것은 이지역이 일제하 식민지주제가 가장 발달한 지역의 하나이기 때문이다.³

³ 죽산면은 1910년대 농업생산성을 둘러싼 최근 논쟁의 주된 대상지역이기도 하다. 식민지시대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2절에서는 죽산면의 지리적 여건을 간략히 소개하고, 본고에서 활용한 『토지대장』의 자료적 특징을 살펴본다. 3절에서는 『토지대장』에 기록된 토지등급이 조사된 방법과 그로부터 토지생산성을 계산한 방식을 소개한다. 4절에서는 이 수치를 이용하여 식민지하 및 농지개혁 전후 시기의 토지생산성 변화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논의를 요약하고 그 함의를 정리한다.

그림 1. 죽산면 지도(1917년 및 2009)



자료: 한국오만분의일지형도(김제, 1917) 및 25000분의1지형도(만경, 2009)

2. 죽산면 경지규모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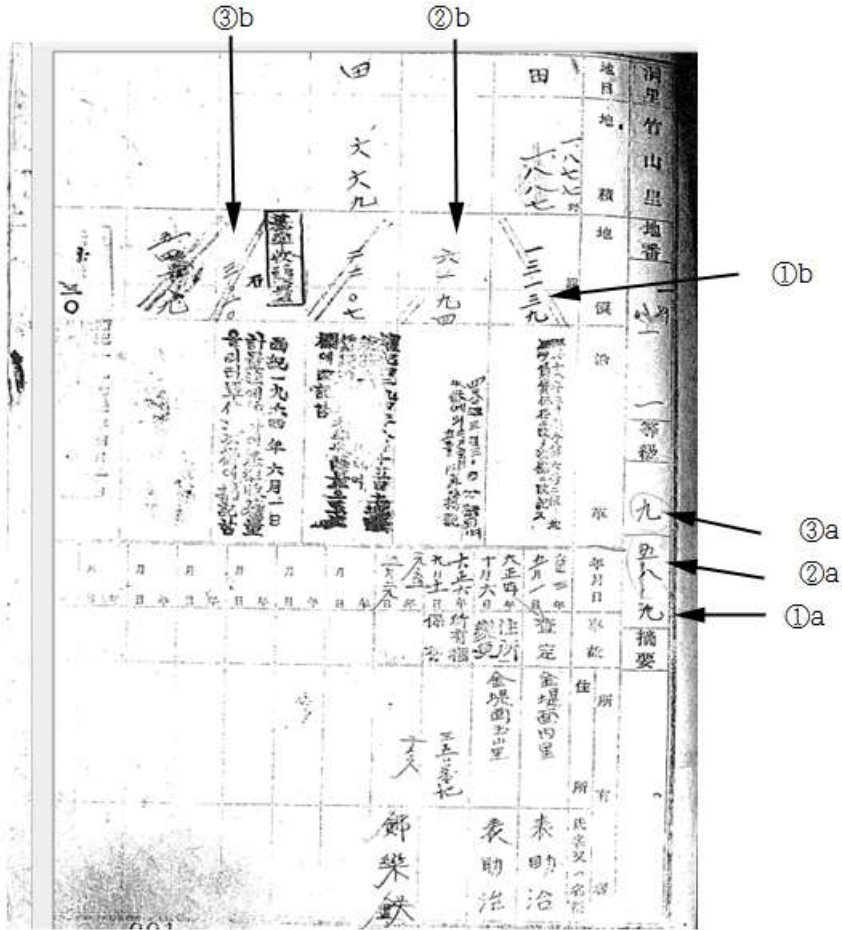
죽산면은 전라북도 김제평야의 핵심부로 만경강과 동진강이 흐르고 있으며, 남한의 대표적 곡창지대의 하나이다. 죽산면은 총 8개리로 구성되었는데 자연부락의 수가 46개에 달할 정도로 농업경영이 활발한 지역이었다.⁴ <그림 1>을 보면 죽산면은 동쪽으

에 근대적 경제성장의 단계가 시작되었다는 주장(김낙년 2005)이 제시되면서 1910년대 농업 생산력 수준이 새삼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하나로 떠올랐는데(김낙년 2005; 허수열 2006; 허수열 2011; 이영훈 2012), 죽산면은 그 논쟁이 이루어진 핵심대상지역의 하나이기도 하다.

⁴ 죽산면은 1914년 군면 통폐합 당시에 홍산면 연포리, 신흥리 및 홍산리, 반산면의 옥성리, 종신리 및 죽산리, 서포면의 서포리와 대창리 등 8개리와 고부군 백산면 및 부안군 이도면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죽산면으로 개칭하였다. 자료 사정으로 신흥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분석대상이 된 7개리에 1914년부터 1976년 사이에 존재한 23,034필지가 분석대상이다. 죽산면

로 김제읍과 면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동진강을 경계로 부안군 백산면과, 북쪽으로는 신평천을 경계로 김제군 성덕면과 면해 있다. 또 죽산면의 북관으로는 원평천(벽골제의 수로가 이 하천과 만난다)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천혜의 수리조건을 갖춘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토지대장의 예



의 수리시설에 제언이 없는 것이 독특하다. 김제군은 제언이 190개가 있을 정도로 제언이 발달한 지역이지만, (동진농지개량조합 1975) 동진강과 만경강이 모두 죽산면 관내를 통과할 정도로 수리사정이 좋아서 별도의 제언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경지규모의 추이에 대한 본격적 분석에 앞서 본고에서 이용한 『토지대장』의 성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토지대장』은 토지에 대한 기본 장부로서 일제가 실시한 조선 토지조사사업 당시 만들어졌으며, 현재 각 시·군·구청에 보관되어 있다. 김제의 사정공시일은 1916년 8월 1일이고 불복신청기간은 8월 31일부터 10월 29일까지였다.(『보고서』: 423) 토지대장에 등록된 사정일은 대개 1914년 5월 1일이며, 대부분의 필지는 1914년 말까지는 사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⁵ 따라서 『토지대장』은 1914년 이후의 토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1977년 토지대장의 양식이 필지별 카드로 변하면서 식민지시대에 만들어진 『토지대장』은 ‘현역’에서 은퇴했다.⁶ 따라서 『토지대장』은 1914년부터 1977년까지의 토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림 2>는 본고에서 분석한 죽산면 『토지대장』의 한 예이다. 이 토지대장은 죽산면 죽산리 1번지의 것으로 해당 필지가 전이며 1877평임을 보여주고 있다. 토지대장에는 상단에 지목과 면적이, 중간 단에 과세액에 관한 정보가, 하단에 토지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중간 단의 정보를 이용했다.

『토지대장』은 현재에는 연구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비록 토지소유구조를 정확하게 추적하기에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⁷ 20세기 토지소유구조의 변화나 농지개혁의 실태 등에 관한 연구에 이 자료는 적극 활용되고 있다.(이종범 1988; 조석곤 2001; 조석곤 2005a; 조석곤 2005b; 정승진·松本武祝 2006; 정상욱·김석준 2009; 하유식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를 이용해 토지생산성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⁸ 일제시대의 연구가 거의 생산관계적 측면에 관한 측면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

5 일제는 사정일을 토지신고일 기준으로 정리했다. 죽산면 대부분 필지의 토지신고일은 14년 5월 1일이었다. 단 석천현농업주식회사의 소유 토지는 5월 15일로 되어 있으며, 연포리의 경우는 9월 25일에 접수된 것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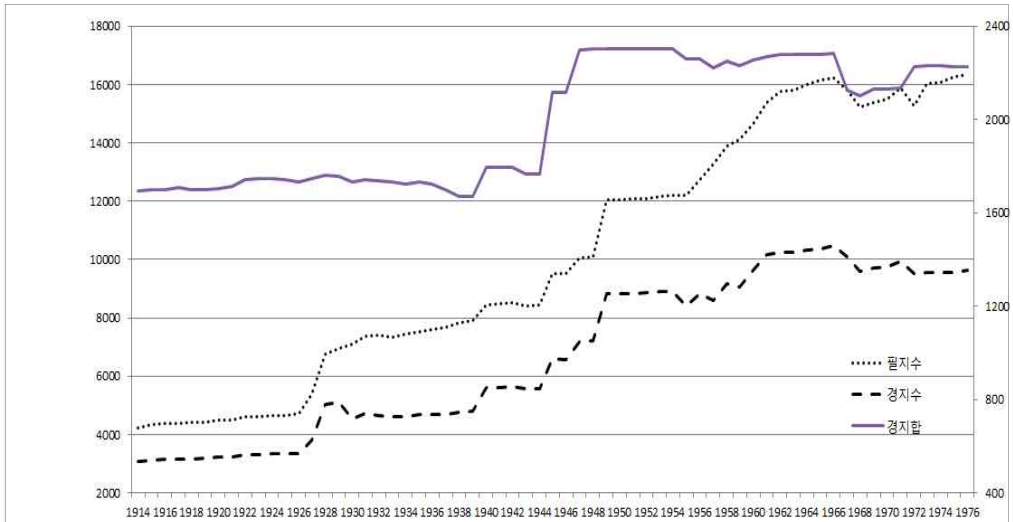
6 관공서에서 이 『토지대장』을 ‘구대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7 첫째, 『토지대장』이 실제의 토지소유권변동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소유권의 변동이 있을 경우 그것이 등기되면 행정관청은 『토지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하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다. 둘째, 『토지대장』은 토지소유자를 개인 명의로 등재하기 때문에 농가단위의 토지소유구조 변동을 추적하는 데는 난점이 있다. 셋째, 『토지대장』은 토지소유권에 관한 장부이므로 농업경영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다행인 것은 이러한 한계는 필지별 토지생산성을 분석하는 이 글의 주제에는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8 『토지대장』의 등급을 이용한 연구는 필자의 관점으로는 Gragert(1994)가 유일하다. 그는 식민지 초기 일본인지주들은 조선인 지주들에 비해 열등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점차 높은 등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일본인 지주들의 토지매집형태를 추론하였다. 이는 본고의 결론과 유사한데, 그가 이용한 전북 익산군이 김제군과 인접한 유사한 특징을 가진 지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도 이로부터 토지생산성을 추론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만, 『토지대장』에 기록된 등급은 인접한 필지와 과세상의 균형을 고려했기 때문에 부정확할지 모른다는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3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토지대장이 담고 있는 생산성 정보는 횡단면적으로는 필지간 상대적 생산성 격차를 보여주며, 시계열상으로는 해당 필지의 토지생산성 변화를 보여주는 유용한 자료이다.

그림 3. 필지 및 경지 추이



주: 왼쪽 축은 필지의 수, 오른쪽 축은 경지면적(단보)이다.

자료: 죽산면, 『토지대장』

이제 『토지대장』으로부터 죽산면 필지수 및 경지수의 추이와 경지면적의 추이를 살펴보자.⁹ <그림 3>을 보면 필지수 및 경지수(경지의 필지수)는 1914년말 각각 4,241필 및 3,083필이었다가, 1976년말에는 16,349필 및 9,618필로 대폭 증가하였다. 장기적으로 필지수와 경지수의 격차는 벌어지는 추세를 보였는데, 1930년대 전반의 경우는 수리시설 관련 지목(하천, 제방, 구거, 유지 등)이 늘었기 때문이며, 1960년 이후에는 지적제도의 변화로 도로도 별도의 필지로 등재되었기 때문이다.

⁹ 이 글에서는 1961년 기준수확량이 적용된 시점까지 분석하지만, 『토지대장』에는 1976년 말까지의 정보가 있으므로 그 시점까지 살펴본다. 죽산면 토지소유구조의 변동에 대해서는 조석곤(2005b)를 참고하라.

표 1. 죽산면 리별 경지정리에 따른 필지 변화의 시기별 현황

단위: 필지, 단보

가. 폐쇄된 필지

	죽산	홍산	서포	연포	종신	대창	옥성	계
401210					580 2782.9	30 50.1		610 2833
401218				166 547.8				166 547.8
430427	108 257.4							108 257.4
470630	22 21.4							22 21.4
471001					24 95.8	273 811		297 906.8
580510		788 2132.1						788 2132.1
671201	475 1600.7							475 1600.7
680726			499 227.2	87 33.7				586 260.9
720610			894 1404.7	1892 2481			284 537.4	3070 4423.1
731231	51 154.7							51 154.7
계	656 2034.2	788 2132.1	1393 1631.9	2145 3062.5	604 2878.7	303 861.1	284 537.4	6173 13137.9

나. 신규 등록된 필지

	죽산	홍산	서포	연포	종신	대창	옥성	계
401210	54 195.3				729 2713.8	43 126.3	266 848.4	1092 3883.8
401218				205 636.4				205 636.4
450204			896 3188.5					896 3188.5
471001					27 83	742 2613.8		769 2696.8
580510	68 232.2	689 1969.7						757 2201.9
720610	163 527.9		233 697.7	556 1658.2			1 1	953 2884.8
720923				178 538				178 538
721027	69 243.3						4 9.3	73 252.6
721230	230 760						161 496.1	391 1256.1
731001	53 174.1							53 174.1
계	637 2132.8	689 1969.7	1129 3886.2	939 2832.6	756 2796.8	785 2740.1	432 1354.8	5367 17713

주: 폐쇄일 및 신규등록일의 기재형식은 yyymmdd임.

경지의 필지수와 경지면적은 대략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192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을 보면, 경지면적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필지수는 급증한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산면에서 진행된 경지정리사업과 그에 따른 『토지대장』의 정리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지정리나 대규모 수리사업 등을 통해 토지의 형상이 크게 바뀔 경우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여 토지대장을 새로 만들고, 종래 사용하던 토지대장은 폐쇄하여 폐쇄대장이라는 장부로 보관한다. 죽산면은 대규모 수리사업이나 경지정리가 잦아서인지 유난히 폐쇄대장이 많았다. 따라서 폐쇄대장의 필지와 신규 등록된 필지를 비교하면 경지정리의 전후 사정을 알 수 있다.

<표 1>은 죽산면 리별 경지정리에 따른 필지 변화를 일자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경지가 폐쇄된 시점과 신규 등록된 시점에 차이가 있는 것은 경지정리가 시작된 시점과 경지정리 후 행정적인 정비가 완성되는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930년대 후반 경지정리사업의 결과로 사라진 필지는 1940년대 초반부터 폐쇄되기 시작하고, 신규 필지의 등록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1947년 말에 정리된다. 1960년대 후반의 경지정리사업으로 필지는 1967년부터 폐쇄되기 시작하지만 신규 등록은 1972년부터 시작되어 1973년 말에 종료된다.¹⁰

폐쇄된 면적보다 신규 등록된 면적이 약 457정보 더 많은데, 이 늘어난 면적은 대략 1940년대 경지정리의 결과이다. 1940년대 죽산리는 소폭 감소했지만, 서포리, 대창리, 옥성리의 면적이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서포리는 약 320여 정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면적증가는 해안지대의 간척의 결과는 아니고, 1930년대 후반 원평천의 물길을 바꾸는 대규모 토목공사의 결과였다(허수열 2011). 해안 간척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죽산면 서쪽의 제방은 대략 1920년대 후반에 완공되기 때문이다. <그림 1>의 두 지도를 시기별로 비교해 보면, 1910년대 원평천의 수로는 서쪽으로 흐르다가

¹⁰ 양자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폐쇄대장의 장부 정리시기를 새로운 토지대장이 시작되는 시점과 맞추어 정리하였다. 죽산리의 경우 1969년 12월 27일 경지정리 신고되었는데, 이 필지들은 신규 필지 환지일인 1972년 6월 10일로 폐쇄하였다. 홍산리의 경우 신규 등록된 토지는 1958년 5월 10일인데, 폐쇄대장의 토지개량신고는 1943년 4월 7일이다. 그런데 폐쇄대장에도 1950년대 중반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모두 1958년 5월에 폐쇄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서포리 및 연포리의 경우 1969년 12월 27일 및 1971년 6월 3일에 경지정리가 시작된 필지는 1972년 6월 10일로 정리하였다. 대창리와 종신리의 경우 1937년 5월 3일 경지정리가 시작되었지만, 1943년의 등급변화가 기록되지 않은 폐쇄지번은 1940년 12월 10일, 나머지는 1947년 10월 1일로 정리하였다. 옥성리의 토지개량신고는 1967년 12월 1일이지만, 신규필지는 1972년 6월 10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날짜로 폐쇄하였다. 또 서포리와 연포리에는 1968년 7월 26일 부로 바다가 된 필지가 많았는데, 이 필지들은 모두 같은 날짜로 폐쇄하였다.

죽산리에서 유희마을과 영구마을 사이를 지나 남서쪽으로 흘러 동진강과 만났다. 하지만 최근 지도를 보면 서진하던 원평천이 죽산리에서 오히려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해창마을에 이르러 바다로 서진함을 알 수 있다.

이제 이상의 내용을 옆두에 두면서 『토지대장』에 나타난 경지수와 경지면적의 추이를 살펴보자. <그림 3>를 보면 경지수는 일제시대에는 1920년대 후반과 1940년대 초반, 대한민국에서는 194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에 급증한다. 한편 경지면적은 1914년 1,693정보였다가 1928년 1,760정보에 이르기까지 소폭 증가했다. 이후 경지면적은 1939년 1,671정보에 이를 때까지 구거 등 수리시설의 확장으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1940년 1,796정보, 1947년 2,300정보로 대폭 증가했다.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경지면적은 1955년 2,304정보를 정점으로 하향추세를 보이다가 1970년대 후반에는 2,226정보까지 감소한다. 1930년대와 1950년대 후반 이후의 감소추세는 수리시설 확대에 따른 지목변환에 기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경지면적의 감소를 농업생산력 감퇴의 증거로 해석할 수는 없다.¹¹

194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경지수의 증가를 제외한 다른 세 시기의 경지수 증가는 경지면적의 증대 없이 이루어졌다. 이는 이 시기들의 경지수 증가가 면적증가가 아닌 필지 분할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1920년대 후반, 특히 1927년과 1928년 두 해에 걸쳐 분필되어 늘어난 경지는 총 1,075필로 1928년 죽산면 전체 경지 5,041필의 21.3%에 달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분필이 이루어진 것은 1925년 동진수리조합의 창립과 그에 따른 토지개량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동진수리조합의 새 수로가 건설되면서 기존 농지의 필지 분할이 수반되었고 그에 따라 경지수가 급증했다.¹²

한편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경지수가 급증한 두 시기는 모두 농지개혁과 관련이 있다. 1940년대 후반 및 1960년대 초반 경지수의 증가는 농지개혁의 결과 토지가 분필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본인지주가 소유하던 한 필지의 논을 2명 이상의 소작인이 경작했을 경우 해당 필지는 그 소작인들에게 분배되며,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때 그 필지는 소작인별로 분할되었기 때문이다. 경지수가 현저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지면적에 변화가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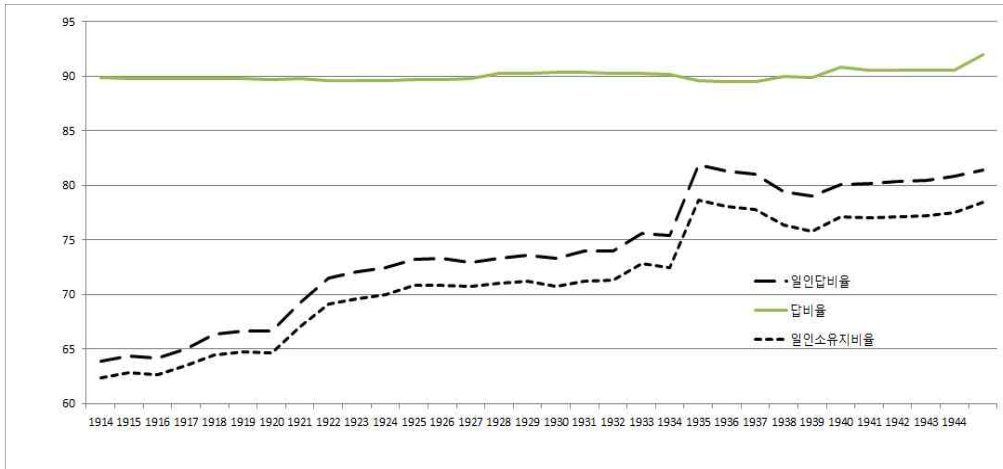
반면 1940년대 초반의 경지수의 증가는 원평천의 물길을 돌리는 대규모 수리개선공사의 결과였다. 그 결과 경지수만 아니라 경지 면적도 급증하였다. 이 시기는 20세기

¹¹ 1930년대 후반 및 1960년대 후반 경지면적이 두드러지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앞서 언급한 경지정리에 따른 필지의 폐쇄시점과 신규 등록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¹² 같은 기간 경지면적은 1926년말 1,732정보에서 1928년말 1,760정보로 약간 증가하였을 뿐인 이유도 경지수 증가가 기존 필지의 분할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죽산면 역사상 가장 경지면적이 대폭 확대된 시기였다. 허수열(2011)은 이러한 대규모 토목공사가 죽산면 수리시설에 대한 총독부의 물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았다.

그림 4. 식민지시대 죽산면 일본인 토지소유의 연도별 추이



자료: 죽산면, 『토지대장』

이러한 대규모 지원은 죽산면이 일본인대지주가 밀집된 지역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인 대토지소유자의 이름은 『토지대장』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¹³ 예를 들면 죽산면에는 김제지역에서 1000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熊本利平의 토지가 매우 많았다. 그는 1910년대에는 정읍에 거주하였으나, 1920년대 후반 옥구로 이주하였다. 그는 1933년 10월에 토지를 적극 매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 토지는 1935년 3월 조선신탁주식회사에 넘어갔다가, 다음해인 1936년 4월 4일 다시 자신의 소유자가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구마모토농장에 1936년 4월 18일 질권이 설정되었는데, 이는 해방 될 때까지 계속된다. 橋本農場도 토지를 대량 집적한 사례이다. 우선 金子圭介의 토지가 1934년 2월에 百十銀行으로 넘어갔다가 1937년 3월에 하시모토농장으로 넘어갔으며, 梶富安左衛門의 토지도 1934년 12월 하시모토농장에서 인수

13 김제에는 일제하 일본인 대지주의 토지가 많았다. 대표적인 일본인 농장으로는 東山農場(수원: 이하 팔호안은 사무소 소재지이다), 大倉農場(군산), 熊本農場(태인), 細川農場(익산) 등을 꼽을 수 있으며, 김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농장 중 石川縣農業株式會社, 島谷産業株式會社, 中紫産業株式會社, 橋本農場 등 굴지의 농장이 많았다. 특히 橋本農場은 죽산면 일대에 집중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였다. 하시모토농장 뿐 아니라 하시모토家の 사람들도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제 죽산면 일본인 토지소유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자. 죽산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일본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농장경영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들이었기 때문에 일본인 토지소유규모로부터 죽산면의 식민지주제 발전정도를 추론할 수 있다. <그림 4>에는 죽산면 전체 경지/답에서 일본인 소유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하였다. 먼저 답비율은 식민지시대 전기간에 걸쳐 89.5%~90.5% 사이의 값을 취하고 있었다. 1920년대 동진수리조합이 창설되었음에도 답 면적의 비중이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은 이미 이 지역이 식민지 이전부터 답작이 주였음을 보여준다.¹⁴

죽산면 경지 중 일본인(혹은 일본인기업) 소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14년 62.3%에서 1944년 77.4%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1935년 일본인소유지는 전년도 1,248정보에서 1,360정보로 110정보 이상(9.0%) 증가하였는데, 이처럼 소유면적이 대폭 증가한 것은 이 해 조선토지신탁주식회사의 소유지가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농업공황의 여파로 경영이 악화된 조선인지주들의 토지가 신탁경영의 명목으로 위탁 관리되었다가 다음 해 다시 원소유자 또는 다른 지주들에게 넘어갔던 것이다(김용섭 1991). 1934년 소유지가 없었던 조선토지신탁주식회사의 소유면적은 113.5정보로 급증하였다가 1936년 0.7정보 수준으로 급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토지소유가 급격히 감소하지 않은 것은 조선토지신탁주식회사로 넘어간 토지의 대부분이 일본인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인 토지소유면적은 전시기에도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데, 1930년대 후반 이후 식민지주제의 쇠퇴양상을 보이던 예천과 원주와는 다른 양상이라 하겠다(조석곤 2001; 조석곤 2005a).

죽산면은 일본인 소유지의 비중이 이미 1920년대 중반 70%를 넘을 정도로 일본인 주도의 식민지주제가 발달한 지역이었다. 원평천 개수공사에서 보여주듯, 조선총독부도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당연하게도 일본인지주들은 전보다는 답 소유비율이 높았는데, 죽산면 전체 답에서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14년 63.9%에서 1944년 80.8%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전체 경지에서 차지하는 일본인 소유지 비중과의 격차도 비록 미세하긴 하지만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 일본인소유지 중에서 답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1914년에도 92.1%로 압도적이었지만, 1944년에는 94.4%에 이를 정도로 심화되고 있었다.

¹⁴ 원평천 개수공사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토지대장에 반영된 1945년에 답 비율은 92%까지 상승하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970년대에는 93%를 상회한다. 대한민국 정부하에서 수리시설의 확대는 기존의 천수답을 거의 없앴으로써 답면적을 극한의 수준으로까지 확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토지대장』의 토지등급과 토지생산성

이 절에서는 식민지하 토지생산성의 변화를 『토지대장』에 기록된 토지등급으로부터 추론하기 위하여, 토지등급이 어떤 방법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수치로부터 토지생산성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토지대장』에는 해당 필지의 토지생산성을 추론할 수 있는 토지등급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토지대장』이 필지별 과세표준에 관한 기본 장부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토지대장』에는 적어도 4번에 걸친 과세표준조사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다. 첫째 과세표준은 조선토지조사사업 당시 진행된 지가인데, 이때 결정된 지가는 경지에서는 1943년까지 변하지 않았다. 지가조사의 기초자료는 1909~1913년의 평균수확량이었다. 둘째 과세표준은 1940년부터 3년에 걸쳐 시행된 임대가격조사에 의해 결정된 임대가격인데, 이 임대가격은 1936~1940년간의 평균이며(조석곤 2012: 92), 그 결과는 1943년에 『토지대장』에 반영되었다. 셋째 과세표준은 기준수확량으로 이는 1957년부터 3년에 걸쳐 실시한 기준수확량조사의 결과였다. 1961년 『토지대장』에 반영된 기준수확량은 1956~1960년의 평균수확량에 근거한 것이었다. 넷째 조사는 1973년 기준수확량 등급에 의한 과세제도의 변화시에 이루어졌다.¹⁵

『토지대장』의 등급 정보는 등급 설정 당시 해당 필지의 토지생산성을 보여주는 매우 유력한 지표이다. 특히 이 등급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비교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2> 토지대장 양식에 제시한 죽산리 1번지의 경우 첫째 기준인 ‘지가’는 131.39엔(①b)이었는데, 이는 9등급((①a)에 해당하는 지가였다. 둘째 기준인 ‘임대가격’ 산정을 위한 등급은 58(②a)이었고 임대가격은 61.94엔(②b)이었다. 셋째 기준인 ‘기준수확량’은 9등급(③a)에 3.010석(③b)이었다.

필지별 토지등급은 과세표준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조세징수와 관련된 정치적 의도와 관련하여 등급을 상향조정하거나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한 하향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가’의 경우는 토지생산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조석곤 2003), ‘임대

15 『토지대장』에 기록된 네 번의 과세기준조사의 근거가 된 것은 각각 「토지조사령」(1912), 개정 「지세령」(1943), 「토지세법」(1961), 「지방세법」(1973) 등이다. 넷째의 조사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1973년부터는 매년 기준수확량을 조사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 기준수확량을 조사방식은 변함이 없었고, 일제 식민지배가 토지생산성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려는 본고의 주제와는 거리가 있다. 1970년대 이후의 생산성 변화는 이른바 녹색혁명의 성과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가격'은 전시하 재정확보를 위해 이러한 조정을 덜 했을 가능성이 높다(김옥근 1994).

하지만 횡단면적으로 볼 때 이러한 '참작'은 대개 모든 필지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필지별 토지생산성의 상대적 격차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다. 예를 들면 1910년대 초반 또는 1930년대 후반 조선인과 일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있어서 생산성 격차를 분석할 때 토지등급을 활용하여 계산한 토지생산성을 이용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토지대장은 한 필지의 시계열상의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해당 토지등급이 산정된 역사적 시점의 특성을 적절히 참작한다면 해당 필지의 생산성 변화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등급을 부여하는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등급이 부당하게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한다면,¹⁶ 토지등급은 횡단면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필지간 상대적 토지생산성 격차를 보여줌과 동시에 시기별 토지생산성의 변화에 대해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제시대 특정 지역의 토지생산성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이만한 자료도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제 각 시기의 필지별 과세표준 산정방식과 그것에 근거하여 『토지대장』에 기록된 과세표준이 담고 있는 필지별 토지생산성 수준이 얼마인지 살펴본다. 『토지대장』에는 과세표준별 토지등급이 기록되어 있는데, 과세지가·임대가격·기준수확량 등 각 과세표준에 따른 필지별 값은 등급별 최저수확량에 근거하여 계산되었기 때문에 과세표준간 비교의 일관성은 유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비교 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각 과세표준을 100평당 토지수확량으로 환산했다. 참고로 각 과세표준의 등급별 수확량은 부표에 제시했다.

첫째 기준인 지가로부터 1910년대 초반의 평균 토지생산성을 알 수 있다. 조선토지조사사업에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지가는 수익지가였다.(조석곤 2003) 수확량은 먼저 표준지를 확정하고, 그 표준지의 등급을 준용하여 개별 필지의 토지등급을 정하는 방

식으로 진행하였다. 지가는 지가(X) =
$$\frac{\text{수확량} \times \text{곡가} \times \left(1 - \frac{50}{100} - \frac{5}{100}\right) - \frac{3}{100} X}{\text{환원율}}$$
 의 공식으

로 계산했다. 환원율과 곡가는 도별로 일정한 것이 원칙이었고, 특수한 사정이 있는 군이나 도서지방의 경우에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다. 김제군 죽산면의 경우 환원율은 9%였으며, 곡가는 석당 벼 6.45원, 보리 5.5원으로 계산했다(조석곤 2003, 325-7). 위

16 물론 식민지시대 조선총독부가 토지등급 산정시에 일본인에게 과세상의 편의를 부여하기 위해 낮은 등급을 부여한다거나, 특정 소유자의 필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은 등급을 부여하는 등 자의적인 조정을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토지조사사업의 소유권 사정에 관한 연구로 미루어볼 때 이러한 자의적 조정 가능성은 무시해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가계산식을 이용하면 필지별 수확량은 $\frac{0.12}{0.45} \times \frac{\text{지가}}{\text{곡가}}$ 이며, 따라서 100평당 수확량은 전의 경우 $\frac{160}{33} \times \frac{\text{지가}}{\text{면적}}$, 답의 경우 $\frac{1600}{387} \times \frac{\text{지가}}{\text{면적}}$ 이다. 이 지가는 현실의 토지생산성을 약 20% 과소평가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⁷

둘째 기준인 임대가격으로부터는 1930년대 후반의 평균 토지생산성을 구할 수 있다. 임대가격조사¹⁸는 「조선토지임대가격조사령」(1940.12.)에 의해 1941년 4월 1일 현재 지세를 납부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전시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여 조사가 이루어졌긴 하지만,¹⁹ 이 역시 조사 시점의 필지간 토지생산성의 상대적 격차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임대가격이 해당 필지 실제생산액의 50%라는 가정하에 필지별 토지생산성을 계산한다. 실제생산액의 50%는 당시 표준적인 소작료수준이었으며, 「지세법」(법률 제155호, 1950.12.1.)에서도 임대가격은 전답수입금액의 50%로 계산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비율은 일반적인 관행이었다.²⁰ 임대가격조사시 활용한 곡가는 김제군의 경우 석당 벼는 17.1원이며, 나뭇도 17.1원으로 동일했다(광주세무감독국 1943, 305). 100평당 수확량은 $\frac{\text{임대가격} \times 2}{\text{곡가}} \times \frac{100}{\text{면적}}$ 이므로,

-
- 17 지가산정에 사용된 총수확량은 답의 경우 벼 2482.4만석이었음에 반하여(『보고서』 691), 1918년 답의 실제 수확량은 현미로 1529.4만석이였다(『조선농업발달사』 부표 13). 벼와 현미의 환산비율 50%를 적용하면 지가산정용 수확량은 실제 수확량의 81.2%이다.
- 18 조선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정해진 지가는 시가지를 제외하곤 1930년대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때문에 생산구조의 변화에 따른 실제지가의 변동을 과세지가가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워낙 방대한 작업이라 과세표준을 변화하려는 시도는 1940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했다. 일제는 1940년부터 3년여에 걸쳐 전국적으로 약 2천만 필지에 대한 임대가격을 조사했으며, 지세를 임대가격에 의해 부과하기 위해서 제령 제6호 「조선지세령」(1943.3.31.)을 개정했다. 지세율은 임대가격의 5%이며, 임대가격은 10년마다 개정하기로 했다.(조석곤 2012)
- 19 필지별 임대가격은 일정한 지구단위로 묶인 편급구역별로 표준임대가격(토지소유자가 공과, 수선비 기타 토지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조건 하에서 이를 빌려줄 경우 그가 받는 임대료)에 의해 결정되었다. 따라서 이 임대가격은 필지별 실제 임대가격으로 보긴 곤란하다. 이는 전시하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의도가 강했기 때문이다.(김옥근 1994)
- 20 「지세법」은 전시 현물납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지세의 과세표준은 전답에 있어서는 토지의 수입금액 기타의 토지에 있어서는 토지의 임대가격으로 하도록 했다. 여기서 수입금액은 매년작물의 수확량을 조사하여 그 수확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임대가격은 대주가 공과, 수리비 기타 토지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조건으로써 임대할 경우에 대주의 취득하는 1년분의 금액이다. 세율은 전답수입금액의 1000분의 40, 임대가격의 1000분의 80로 책정되었다.

전답의 100평당 토지생산량은 모두 $\frac{\text{임대가격}}{\text{면적}} \times \frac{200}{17.1}$ 이다.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수익

지가는 현실의 수확량을 과소평가했지만, 임대가격조사의 목적의 하나가 지세증정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임대가격은 적어도 현실의 임대가격을 낮게 평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조석곤 2012).²¹

셋째 기준인 기준수확량으로부터는 1950년대 후반의 평균 토지생산성을 구할 수 있다. 「토지세법」(법률 578호, 1960.12.31.)은 1950년대 현물납이었던 지세를 금납으로 바꾸면서 전답에 대한 지세를 폐지하고 농지세를 부과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답의 과세표준은 「토지과세기준조사법」(법률 458호, 1957.12.2.)에 의해 조사된 기준수확량으로 바뀌었다. 기준수확량은 “매년 그 토지에서 생산하는 풍·흉년을 제외한 5개년 평균수확량”이며, 이 제도에 의한 과세는 1961년도부터 시행하였다. 100평당 수확량은 기준수확량 $\times \frac{100}{\text{면적}}$ 의 공식에 의해 손쉽게 구할 수 있다.

4. 죽산면 토지생산성의 변화

식민지시대 토지생산성 변화는 1914년 과세지가 산정에 사용한 토지등급과 1943년 임대가격 산정에 사용한 토지등급을 필지별로 비교하면 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농지개혁에 의한 토지생산성 변화는 임대가격 산정에 사용한 토지등급과 1961년 기준수확량 산정에 사용한 토지등급을 필지별로 비교하면 된다. 전자로부터 우리는 식민지주제가 토지생산성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알 수 있으며, 후자로부터는 농지개혁에 따른 생산관계 변화의 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 3절에서 서술한 바 있지만 과세지

21 이 임대가격이 죽산면의 평균 생산성과 어느 정도 격차를 보이고 있을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로는 농지개혁의 공통배율이 있다. 이 비율은 법정 임대가격과 실제 생산액 사이의 격차를 보정하기 위해 면별로 $\frac{\text{중급농지평년작생산량} \times 1.5 \times \text{법정곡가}}{\text{중급농지임대가격}}$ 와 같은 방식으로 계

산하였다. 만일 법정 임대가격이 실제 생산액을 정확하게 반영하였다면 임대가격은 생산액의 50%일 것이므로 공통배율은 이론상 3이어야 한다. 그런데 김제 죽산의 공통배율은 답이 1.018이고 전이 1.016이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일제 말기와 해방 공간의 혼란기에 수확량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1/3수준으로 감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1943년 책정된 중급농지의 임대가격은 상당 정도 높게 책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는 1910년대 초반의 토지생산성, 임대가격은 1930년대 후반의 토지생산성, 그리고 기준수확량은 1950년대 후반의 토지생산성을 보여준다. 이하 논의에서는 편의상 각 과세표준이 적용된 시점인 1914년, 1943년, 1961년으로 표현한다.

앞 절에서 우리는 『토지대장』의 토지등급은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토지생산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3년의 임대가격은 전시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식민지기 토지생산성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된 경향이 있으며, 농지개혁 전후의 토지생산성의 변화는 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었을 것이다.

4.1. 식민지시기 토지생산성의 변화

이제 죽산면에서 1914년과 1943년 사이에 필지별 생산성이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살펴보자. 분석의 연속성을 위해 1914년부터 1943년 모두 경지였던 2,130필지만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1914년 총면적은 1,038.6정보였으나 1943년에는 768.1정보로 줄어들었는데, 감소 규모가 큰 것은 경지정리 등으로 폐쇄된 필지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구거·유지 등 수리시설로 분필되어 면적이 감소한 것도 한몫 했을 것이다.²² 답은 1,348필지(63.3%) 909.7정보(87.6%)였으며, 1943년에는 1,545필지(72.5%) 686.8정보(89.4%)로 그 비중이 모두 증가하였다. 수리시설의 확장으로 밭이 논으로 바뀐 경우가 많았으며, 필지수의 증가에 비해 면적증가율이 낮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 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1914년 전은 7-11등급, 답은 11-19등급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1943년에는 전 47-60등급, 답 60-74등급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²³

²² 2절에서 논의한 바 있지만 면적 감소분보다 더 큰 면적의 경지가 신규 필지로 등장했다. 이 필지들은 수리시설의 완비로 1910년에 비한다면 토지생산성이 증대되었을 것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면적 감소가 본고의 결론을 왜곡한다고 볼 수는 없다.

²³ 1914년의 등급은 낮을수록 수확량이 많은 필지인 반면, 1943년의 등급은 높을수록 수확량이 많다. <부표 1>에 제시한 등급별 최저수확량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4년 100평당 수확량은 전 0.08~0.65석, 답 0.2~1.0석의 범위에 있었으며, 1943년에는 전 1.5~4.0석, 답 4.0~11.0석의 범위에 있다. 1914년 전의 경우는 보리이며, 나머지는 모두 벼의 석수이다. 1914년 전의 생산량을 벼로 환산하면 더 줄어들 것이다. 이 수치들은 100평당 수확량이지만 본문에서는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단보당(300평당) 수확량으로 설명한다.

표 2. 1914년 및 1943년 지목별 민족별 단보당 수확량의 추이

		전			답			계		
		조선인	일본인	계	조선인	일본인	계	조선인	일본인	계
1914	필수	543	239	782	738	610	1348	1281	849	2130
	면적(정보)	71.6	57.3	128.9	365.4	544.3	909.7	437.0	601.6	1038.6
	수확량(석)	753.3	540.2	1293.5	6455.9	7185.7	13641.6	7209.2	7725.9	14935.1
1943	필수	335	250	585	519	1026	1545	854	1276	2130
	면적	41.3	40.0	81.3	157.1	529.7	686.8	198.4	569.7	768.1
	수확량	668.7	639.7	1308.4	4821.1	15524.1	20345.2	5489.8	16163.8	21653.6
비율	14년 단수	1.05	0.94	1.00	1.77	1.32	1.50	1.65	1.28	1.44
	43년 단수	1.62	1.60	1.61	3.07	2.93	2.96	2.77	2.84	2.82
	증가율	53.8	69.5	60.3	73.7	122.0	97.5	67.7	120.9	96.0

이제 토지등급으로부터 각 필지의 수확량을 환산한 후²⁴ 지목별, 토지소유자별 평균 단보당 수확량을 구한 것이 <표 2>이다. 이제 여기서 구한 평균 수확량을 다른 통계수치들과 비교해보자. 조선토지조사사업 당시 김제군 단보당 평균지가는 전 23.05원, 답 43.86원이었다.(『조선지리지자료』, 408) 이를 3절에서 설명한 공식에 따라 단보당 수확량을 구하면 전 1.1175석, 답 1.9320석이였다.²⁵ 토지대장의 1914년 단수는 실제 토지생산성보다 과소평가했다는 추론과 일치한다.

한편 조선총독부가 1930년대에 실시한 농가경제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작농가의 단보당 벼의 평균수확량은 1933년 3.4473석 및 1938년 3.2934석이였으며, 자소작농가의 경우는 1933년 3.5430석 및 1938년 3.9024석이였다(『농가경제개황조사』). 이 자료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단수가 높게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943년 임대가격조사 결과로부터 추론한 생산성보다도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낮게 잡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충분히

24 1914년 『토지대장』에는 지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생산량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지가와 면적 정보로부터 역으로 곡가를 산출한 결과 보리는 5.33원, 벼는 11등급 및 16등급의 경우는 6.4원, 12·15·18등급은 6.22원, 13·17·19등급은 6.33원, 14등급은 6.09원으로 계산했다. 이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곡가 보리 5.5원 및 벼 6.45원과 다른 수치인데,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등급별 최저수확량을 기준으로 생산량을 계산하였다.

25 당시 조사된 중등 전답의 1910년도 이후 5개년 평균생산량은 단보당 전 0.924석, 답 2,331석이였다(『조선지리지자료』, 417). 전답 모두 <표 3>의 단수보다 높는데, 이는 토지조사사업의 등급에 반영된 생산량은 실제 수확량보다는 낮았다는 조석곤(2003)의 설명과 일치한다.

수궁할 만한 수치이다.

이 점을 감안하고 <표 2>를 해석해 보자. 1914년에 비해 1943년 토지생산성은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은 60.3% 증가한 반면 답은 97.5% 증가했는데, 답이 생산성 증대를 견인한 것을 알 수 있다. 1914년 답의 생산성은 전에 비해 가격 단위로 환산할 때 75.9% 높았는데, 1943년에는 180.7% 더 높았다.²⁶

민족별로 보면 일본인은 1914년 544정보의 답을 소유했지만 단수는 1.32석에 불과하여 365정보를 소유한 조선인의 단수 1.77석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1943년에는 소유면적도 1,026정보로 조선인의 519정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단수도 2.93석으로 조선인의 3.07정보에 근접했다. 그리하여 합계생산성에서는 일본인지주 소유지의 토지생산성이 조선인지주 소유지의 그것을 초과하기에 이르렀다. 얼핏 보면 일본인지주가 토지생산성 상승을 주도했다는 인상을 주지만, 이것은 전답별 토지구성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논이 비중이 일본인의 경우는 93.0%로 조선인의 79.2%보다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²⁷

<표 2>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1914년의 경우 일본인이 소유한 경지는 조선인이 소유한 경지에 비해 생산성이 낮으며, 특히 답에서는 현저하게 낮다. 19세기 이전 일본인 토지소유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1914년 현재 일본인이 소유한 토지는 적어도 20세기에 들어와 일본인이 매입한 토지로 보아야 한다. 이는 1910년을 전후하여 일본인이 매입한 토지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토지였을 가능성이 많음을 의미한다. 둘째, 1943년에 이르면 이러한 생산성 격차는 줄어들지만 여전히 조선인지주가 소유한 경지의 생산성이 전답 모두 높다. 두 시점 사이에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토지소유권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일본인 소유토지의 생산성이 조선인 소유토지의 생산성을 넘어서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1930년대 말이 되면 소유자의 민족성과 무관하게 필지별 토지생산성은 수렴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우리는 다른 방증자료를 통하여 <표 2>에 제시된 토지대장의 1914년 단수는 1943년 단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표 2>의 민족별 단수의 변화를 해석해보자. 일본인 대토지소유자들이 20세기 초반 매입한 토지는 조선인지주가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에

26 이처럼 큰 차이가 나타난 이유의 하나는 1915년 곡가는 벼 6.45원 보리 5.5원이었는데, 1943년에는 벼 17.1원 보리 11.2원으로 그 격차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27 1914년의 경우 전체 소유지에서 답이 차지하는 비중은 조선인의 경우 83.6%이고 일본인의 경우는 90.5%로 여전히 일본인의 비중이 높지만 그 격차가 크진 않았다.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열등한 토지였다. 이후 죽산면 일본인 대지주들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생산성을 급격히 상승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애당초 상대적으로 비옥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조선인지주의 토지생산성을 추월하지는 못했다. 이는 조선인 지주가 소유한 토지의 생산성도 당시 농업수준에 비추어볼 때 일본인 토유토지의 그것에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에까지 도달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식민지지주체가 극단적으로 발달한 것으로 여겨지는 죽산면에서조차도 이른바 지주의 ‘동태성’에 있어서 민족별 차이가 없었던 셈이다.

4.2. 농지개혁 전후의 토지생산성 변화

『토지대장』에 나타난 죽산면 토지소유상황은 농지개혁 이전과 이후로 크게 변했다.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민지시대에는 일본인대지주를 중심으로 한 식민지지주체가 극단적으로 발달했다면, 농지개혁 이후 죽산면 토지소유의 불평등도는 급격히 개선되었다.²⁸ 죽산면에서 두 시기는 각각 식민지지주체와 영세자작농체제의 전형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농지개혁을 통해 새로이 등장한 토지소유자는 대부분 그 토지를 경작하던 종래의 소작농이므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경작자에 있어서의 연속성은 보장된다. 따라서 두 시기 토지생산성의 차이는 상당 부분 농지개혁에 의한 생산관계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농지개혁이 토지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1943년과 1961년간의 토지생산성 변화에 대해 살펴보자. 1943년과 1961년 사이에 항상 경지였던 필지는 989필지였다. 필지수가 적은 이유는 이 기간 동안 경지정리 등으로 폐쇄되거나 신설된 필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필지들의 총면적은 1943년 535.6정보에서 1961년 212.1정보로 감소하였다.²⁹

28 무토지소유농을 고려한 죽산면 토지소유규모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41년 0.90이었지만 농지개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무리되는 1960년대 중반에는 0.63으로 급격하게 하락했다.(조석곤 2005:303)

29 등급별 분포는 <부표 3>에 제시했다. 1943년의 등급별 분포는 앞의 예와 동일하며, 1961년의 경우는 전은 5-13등급에, 답은 8-23등급에 분포되어 있었다.

표 3. 1943년과 1961년 사이의 지목별 토지생산성의 변화

	1943			1961		
	전	답	계	전	답	계
필수	257	732	989	295	694	989
면적	71.7	463.9	535.6	26.5	185.5	212.1
생산량	1084.1	13471.5	14555.6	331.2	5549.9	5881.1
단수	1.51	2.90	2.72	1.25	2.99	2.77
증가율				-17.5	3.0	2.0

<표 3>을 보면 1943년과 1961년 사이의 지목별 토지생산성을 보면 전의 단보당 수확량은 20% 가량 줄어들었지만, 답의 경우는 3%로 미세하나마 증가하였다. 해방 직후의 혼란과 한국전쟁, 그리고 비료 수급상의 문제 등 토지생산성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산면의 경우 1961년의 토지생산성은 전의 경우 하락하였지만, 답의 경우는 소폭이나마 증가했으며, 경지 전체로 보면 해방 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었다.³⁰ 농지개혁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농업생산은 과거 식민지주제하 가장 생산성이 높았던 시기에 비해서도 결코 뒤처지지 않았던 것이다. 또 1943년의 토지생산성이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생산성은 더 증가했을 것이다.³¹

<표 3>의 결과는 농지개혁이 토지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둘러싼 Jeon & Kim(2000)과 우대형(2001)의 논쟁 중에서 Jeon & Kim을 지지하고 있다. 가장 자본가적이었다고 평가되던 농장형 일본인地主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과거 소작인들이 차지하였음에

30 전국 평균으로 볼 때에도 1950년대 후반 미곡 생산성은 1956년의 흉년을 제외하면 해방 전 수준을 회복했는데(조석근·오유석 2003: 269), 죽산면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31 <표 2>의 2,130필지에 비해 989필지로 감소한 것에 대해 표본의 편의를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폐쇄·신설에 따른 경지 지변의 변화로 <표 3>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필지들의 경우 동 기간 동안 경지정리와 관개시설의 설치로 오히려 생산성이 증가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필지의 제외는 우리의 추론을 더 강화할 것이다. 이 필지들의 지역별 분포도 1943년 현재 리별 지목별 분포를 표시한 아래 표를 보면 대규모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대창리를 제외하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지역적 편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죽산	홍산	서포	연포	종신	대창	육성	계
전	58	53			44		102	257
답	131	55	63	212	137	3	131	732
계	189	108	63	212	181	3	233	989

도 불구하고, 적어도 죽산면에서는 미곡생산성이 식민지시대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설령 죽산면에서 식민지시대에 대지주가 농업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생산성이 증대했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식민지주제가 해체되고 자작농체제로 바뀐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 효과가 자작농체제가 가져온 인센티브의 효과인지,³² 아니면 식민지주제하 소작인들이 이미 영세소경영에 적합한 노동집약적인 기술을 체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생산성의 급격한 감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전자라면 농지개혁에 의한 생산관계의 교체가 생산성 증대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후자라면 소작농들이 체득한 근대적 생산기술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어느 쪽의 영향력이 더 중요했는지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식민지주제가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던 지역의 사례 연구에 의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지만, 농지개혁이 토지생산성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5. 맺음말

이 글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세기 초반 죽산면에서 일본인이 매입한 토지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토지였다. 일제하 토지생산성이 증대하면서 일본인 소유토지의 생산성도 급격히 증대했지만 식민지시대 조선인 소유토지의 생산성도 동시에 늘었기 때문에, 일본인지주의 토지생산성이 조선인지주의 토지생산성을 역전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죽산면 사례는 양자 사이에 생산성의 상방수렴현상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둘째, 해방과 한국전쟁의 혼란기를 거쳤으면서도 1950년대 후반의 토지생산성은 1930년대 후반 수준을 회복하였다. 비록 전의 토지생산성은 식민지시대의 그것에 미치지 못했지만, 논의 토지생산성은 식민지시대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산성은 증가했다. 농지개혁에 의한 자작농체제하 토지생산성이 식민지주제하의 그것에 못지않았던 셈이다.

³² 우대형(2001)이 “일제하 지주가 생산과정에서 해운 역할-품종, 비료 등의 농사기술 및 신용의 제공-들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은 이들의 역할을 일거에 배제시킴으로서 농지개혁이 가져다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만 것”(245)이라고 주장한 것과 반대로, “일제하 지주의 역할은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으며, 농지개혁의 긍정적 효과는 충분히 생산성에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토지대장으로부터 계산한 1930년대 후반 토지생산성이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위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식민지주체가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킨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성과를 일본인만 전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식민지하 조선인지주도 일본인지주를 상회하는 토지생산성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적어도 죽산면에서는 1950년대 후반 토지생산성이 전전 수준을 회복했는데, 농지개혁 과정 또는 그 이후의 악조건 속에서도 생산성은 감퇴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농지개혁에 의한 생산관계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소경영체제가 유지됨으로써 농업생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이다.

비록 한 지역사례이긴 하지만, 위 두 사실로부터 매우 흥미로운 논점을 도출할 수 있다. 영세소경영이라는 한계를 가진 자작농체제하의 토지생산성이 식민지주제하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더 나아졌다고 한다면, 식민지주제하에서도 지주의 농업경영에 대한 개입 효과보다는 영세소경영을 영위하는 소작인의 노동투입효과가 토지생산성 증대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국전쟁은 분명히 농업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지만, 전쟁 후에도 토지생산성의 감퇴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김제군이 전쟁으로 인한 물적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이기도 하겠지만, 식민지주제하에서 소작인들이 영세소경영에 적합한 근대적 기술을 이미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생산관계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미 소작농이 체득한 농업기술은 지주의 강압이 없어도 소득증대를 향한 ‘인센티브’에 의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셈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제기는 아직은 잠정적이다. 식민지주제가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긴 하지만, 죽산면은 일본인 소유지 및 답의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결론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자작지와 소작지가 적정한 비율로 존재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는 소농경영의 인센티브효과를 좀 더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더 많은 사례연구를 통해 농지개혁이 토지생산성에 미친 효과가 밝혀지고, 식민지유산의 계승과 단절에 관한 학계의 논의도 진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김제군 죽산면. 「토지대장」.
 동진농지개량조합. 1975. 「동진농지개량조합오십년사」.
 임시토지조사국. 1918. 「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보고서」)

- 조선농회. 1944. 「조선농업발달사」.
- 조선총독부. 1919. 「조선지지자료」.
- 조선총독부. 1940a. 「농가경제개황조사-소작농가- 1933~1938」.
- 조선총독부. 1940b. 「농가경제개황조사-자작겸소작농가- 1933~1938」.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농지개혁사자료집」.
-
- 김낙년 편. 2005.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병태. 1981. “농지개혁의 평가와 반성.”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돌베개: 35-66.
- 김성호 외. 1989. 「농지개혁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옥근. 1994. 「일제하조선재정사논고」. 일조각.
- 김용섭, 1991. “한말·일제하의 지주제 - 사례 5. 일제하 조선신학의 농장경영과 지주제 변동-.” 「동방학지」 70: 1-27.
- 김용섭. 1992. 「한국근현대농업사연구」. 일조각.
- 김일영. 2000. “농지개혁을 둘러싼 신화의 해체.”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2(1): 175-216.
- 류기천. 1990. “농지개혁과 토지소유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충남 연기군 남면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14: 147-198.
- 박기혁 외. 1966. 「한국농지제도연구보고서」. 한국토지경제연구소.
- 박석두. 1987. “농지개혁과 식민지 지주제의 해체 -경주 이씨가(李氏家)의 토지경영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11: 187-281.
- 박천우. 1983. “한말 일제하의 지주제 연구 - 압태도 문씨의 지주로의 성장과 그 변동-.”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희진. 1988. “농지개혁을 통한 50년대 한국자본축적-농가수지를 중심으로 경북 월성군 서면 사라리의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병직, 이영훈. 2007. 「대한민국 역사의 기로에 서다」. 기파랑.
- 우대형. 2001. “농지개혁의 생산성 증대효과 분석.” 홍성찬 편. 「농지개혁연구」. 연세대학교출판부
- 유인호. 1975. 「한국농지제도의 연구」. 박문사.
- 이영훈. 2012. “혼란과 환상의 역사적 시공(時空) -허수열의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에 답한다-.” 「경제사학」 53: 143-181.
- 이종범. 1988. “1915-45년 농지소유구조의 변동.” 「전남 무안군 망운지역 농촌사회구조변동연구」.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 이종범. 2002. “20세기 중반 농지개혁과 농촌사회변동 -전라남도 구례군 사례-.” 「역사학연구」 19: 419-442.
- 이지수. 1994. “해방후 농지개혁과 지주층의 자본전환 문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상환. 1984. “농지개혁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상.” 「경제사학」 8: 195-272.
- 장상환. 1985. “농지개혁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하.” 「경제사학」 9: 13-90.
- 장상환. 2000. “농지개혁과 한국자본주의 발전.” 「경제발전연구」 6(1): 141-176.
- 장시원. 1995. “지주제 해체와 자작농체제 성립의 역사적 의의.” 「광복50주년기념논문집 3.경제」.

289-320.

- 정상욱, 김석준. 2009. “토지대장을 중심으로 살펴 본 장유면 농지개혁의 실태.” 「한국민족문화」 33: 369-418.
- 정승진. 2004. “20세기 전반 전통 농촌지역의 사회변동 양상 - 전남 나주군 다시면의 사례.” 「대동문화연구」 48: 235-276.
- 정승진, 松本武祝. 2006. “토지대장에 나타난 농지개혁의 실상(1945~1970).” 「한국경제연구」 17: 41-77.
- 조석곤. 2001. “토지대장에 나타난 토지소유구조의 변화.” 「맛질의 농민들」. 일조각: 390-427.
- 조석곤. 2005a. “토지대장으로 살펴본 토지소유구조의 변화: 원주시 호저면의 사례.” 「농촌경제」 28(1): 1-23.
- 조석곤. 2005b. “‘토지대장’으로 살펴본 토지소유구조의 변화: 김제시 죽산면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향과전망」 6: 293-322.
- 조석곤. 2009. “농지개혁당시 수분배농가의 토지소유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경제사학」 46: 127-161.
- 조석곤. 2011. “농지개혁 진행과정과 정부 지주 농민의 입장 - 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사례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5: 343-410.
- 조석곤. 2012. “식민지말기 지세제도의 변화와 그 역사적 의의.” 「국제경상교육연구」 9(1): 85-109.
- 조석곤, 오유석. 2003. “압축성장을 위한 전제조건 형성.” 「동향과전망」 59: 258-302.
- 최원규. 1985. “한말 일제하의 농업경영에 관한 연구-해남윤씨가의 사례-.” 「한국사연구」 50-51: 275-318.
- 하유식. 2010. “농지개혁 후 울산군 상북면의 정치지배층과 토지소유구조의 변화.” 「지역과 역사」 27: 325-366.
- 함한희. 1991. “해방 이후의 농지개혁과 궁삼면 농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그 변화.” 「한국문화인류학」 23: 21-62.
- 허수열. 2006. 「개발 없는 개발」. 느티나무.
- 허수열. 2011.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 한길사.
- 홍성찬. 1981. “한말 일제하의 지주제연구-강화홍씨가의 추수기와 정책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34: 67-115.
- 홍성찬. 1992. 「한국근대농촌사회의 변동과 지주층」. 지식산업사.
- 홍성찬 편. 2001. 「농지개혁연구」. 연세대학교출판부.
- 홍성찬. 2003. “한말·일제하 지주제연구-서울 종로 포목상점 수납상회의 농지투자사례-.” 「동방학지」 122: 253-292.
- 황한식. 1985. “한국농지개혁연구.” 최장집편. 「한국현대사 I」. 열음사: 479-503.

Gragert, E. H. 1994. *Landownership under Colonial Rule*. Univ. of Hawaii Press.

Jeon, Young-Deok and Young-Yong Kim. 2000. "Land Reform, Income Redistribution, and

Agricultural Production in Kore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48(2): 253-268.

Cho, Seok Gon. 2013. "A Study on Change in the Subae nongga at the Time of the South Korean Land Reform."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26(1): 75-101.

원고 접수일: 2013년 11월 11일
원고 심사일: 2013년 11월 12일
심사 완료일: 2013년 12월 20일

부표 1. 과세표준별 100평당 수확량

가. 과세지가(1910년대 초반의 평균수확량)

등급	田 百 坪 當				畚百坪當
	보리	콩	벼	조	벼
22급					0.050섭 미만
21급					0.050섭 이상
20급					0.100
19급					0.200
18급					0.300
17급					0.400
16급					0.500
15급					0.600
14급	0.015섭 미만	0.009섭 미만	0.010섭 미만	0.010섭 미만	0.700
13급	0.015섭 이상	0.009섭 이상	0.010섭 이상	0.010섭 이상	0.800
12급	0.030	0.018	0.021	0.020	0.900
11급	0.080	0.049	0.057	0.052	1.000
10급	0.200	0.122	0.142	0.132	1.100
9급	0.350	0.214	0.250	0.231	1.200
8급	0.500	0.306	0.357	0.330	1.300
7급	0.650	0.397	0.464	0.429	1.400
6급	0.800	0.490	0.571	0.528	1.500
5급	0.950	0.581	0.678	0.627	1.600
4급	1.100	0.673	0.785	0.726	1.700
3급	1.300	0.795	0.928	0.858	1.800
2급	1.500	0.918	1.071	0.990	1.900
1급	1.500	1.040	1.213	1.122	2.000
특1급	2.000	1.224	1.428	1.320	2.200
특2급	2.300	1.407	1.642	1.518	2.400
특3급	2.600	1.591	1.856	1.716	2.600
특4급	2.900	1.774	2.070	1.914	2.800

나. 임대가격(1930년대 후반의 평균수확량)

등급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임대가격	0.6	0.65	0.7	0.75	0.8	0.85	0.9	0.95	1.0	1.1	1.2	1.3	1.4
등급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임대가격	1.5	1.6	1.7	1.8	1.9	2.0	2.2	2.4	2.6	2.8	3.0	3.3	3.6
등급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임대가격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다. 기준수확량(1950년대 후반의 평균수확량)

등급	1	2	3	4	5	5	7	8	9	10	11	12
석수	0.050	0.100	0.150	0.200	0.250	0.300	0.350	0.400	0.450	0.500	0.550	0.600
등급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석수	0.650	0.700	0.750	0.800	0.850	0.900	0.950	1.000	1.100	1.200	1.300	1.400
등급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석수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200	2.400	2.606	2.806	3.006	

부표 2. 죽산면 1914년 및 1943년 경지의 등급별 현황(동기간 항상 경지인 필지대상)

구분	토지 등급	필지			면적		
		전	답	계	전	답	계
1914년 과세지가	7	34		34	1.7		1.7
	8	161		161	20.9		20.9
	9	461		461	78.2		78.2
	10	96		96	16.0		16.0
	11	30	14	44	12.0	5.0	17.0
	12		65	65		26.7	26.7
	13		118	118		50.8	50.8
	14		182	182		117.0	117.0
	15		190	190		106.4	106.4
	16		223	223		158.7	158.7
	17		360	360		270.6	270.6
	18		189	189		168.3	168.3
	19		7	7		6.2	6.2
	계	782	1348	2130	128.9	909.7	1038.6
1943년 임대가격	47	27		27	10.5		10.5
	55	90		90	12.1		12.1
	58	334		334	49.3		49.3
	59	111		111	9.0		9.0
	60	23	33	56	0.5	20.1	20.6
	61		10	10		1.0	1.0
	62		22	22		7.0	7.0
	63		2	2		0.7	0.7
	64		34	34		6.4	6.4
	65		32	32		17.3	17.3
	66		88	88		47.5	47.5
	67		143	143		58.1	58.1
	68		102	102		61.9	61.9
	69		334	334		180.0	180.0
	70		303	303		138.0	138.0
	71		238	238		78.8	78.8
72		2	2		0.3	0.3	
73		169	169		59.9	59.9	
74		33	33		9.8	9.8	
	계	585	1545	2130	81.3	686.8	768.1

부표 3. 죽산면 1943년 및 1961년 경지의 등급별 현황(동기간 항상 경지인 필지대상)

	등급	필지			면적		
		전	답	계	전	답	계
1943	47	18		18	12.8		12.8
	55	51		51	17.8		17.8
	58	152		152	36.5		36.5
	59	33		33	4.3		4.3
	60	3	25	28	0.2	24.7	24.9
	61		4	4		0.5	0.5
	62		11	11		4.7	4.7
	63		8	8		4.8	4.8
	64		12	12		2.0	2.0
	65		21	21		10.7	10.7
	66		50	50		40.8	40.8
	67		67	67		41.1	41.1
	68		110	110		75.1	75.1
	69		72	72		37.7	37.7
	70		183	183		130.8	130.8
	71		83	83		38.9	38.9
	72		14	14		5.8	5.8
73		65	65		45.0	45.0	
74		7	7		1.3	1.3	
	계	257	732	989	71.7	463.9	535.6
1961	5	15		15	2.0		2.0
	7	65		65	6.1		6.1
	8	13		13	0.6		0.6
	9	169		169	15.6		15.6
	10	29		29	2.0		2.0
	11	2		2	0.1		0.1
	12	1	8	9	0.1	1.9	1.9
	13	1	3	4	0.1	0.3	0.4
	14		12	12		3.1	3.1
	15		3	3		0.7	0.7
	16		23	23		5.4	5.4
	17		40	40		11.7	11.7
	18		81	81		19.3	19.3
	19		81	81		24.7	24.7
	20		211	211		59.8	59.8
21		160	160		43.4	43.4	
22		66	66		14.6	14.6	
23		6	6		0.6	0.6	
	계	295	694	989	26.5	185.5	212.1